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05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윤준병 · 이성윤 · 허성무
朴芝源 · 박홍배 · 임오경
박민규 · 김 윤 · 김 현
조계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지원 조항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는 주행 중 전도·전복 및 추돌 등의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고립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을 “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

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⑪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안전관리) ① ~ ③ (생략)</p> <p><u><신 설></u></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p> <p>⑤ <u>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u></p> <p>⑥ <u>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u></p>	<p>제12조(안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u>이 경우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u></p> <p><u><삭 제></u></p> <p>⑥ <u>제5항 전단</u>-----</p>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생략)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

⑦ 제5항 전단-----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5항 전단-----

-----.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발생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사물인터넷

<신 설>

제19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생 략)
- ④ (생 략)

기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⑪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2조제5항 후단-----

- 6.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